

성폭력사건처리규약 (2020. 03. 27)

제 1조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를 말한다. 본 규약이 다루는 성폭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상대방과의 적극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 합의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하여야 함.
 - 나. 언어적 또는 물리적 저항이 없는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 다. 위협 또는 힘의 사용에 굴복한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 라. 상대방의 옷차림은 동의의 의사 표현이 아님
 - 마. 과거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미래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
 - 바. 한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기로 동의한 것은 다른 사람 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님
 - 사. 개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아.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성립하지 않음
2.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 및 요구를 하고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행위
3.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
4.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제 2조 (규약의 적용범위) ① 본 규약은 행성인의 활동 상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에 적용된다. 단, 신고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사건 발생 당시 비회원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회원가입을 할 시 본 규약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② 행성인 활동의 외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행성인의 임원, 팀장, 소모임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본 규약을 적용한다.

제 3조 (성폭력사건처리 기구의 구성) 본 규약의 정의에 따른 성폭력 사건은 행성인 조정위원회가 본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처리한다.

제 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5조 (조정위원의 제척)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2.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3.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기타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제 6조 (조정위원의 회피) 조정위원은 제5조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 7조 (성폭력 사건처리기구의 역할)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건의 조사 및 중재
2. 가해자 징계 결정 및 단체에 대한 권고
3. 피해자 보호
4. 이행사항의 점검

5. 당사자에게 공지
6.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 결정

제 8조 (의무와 태도) 행정인 조정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건처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피해자 관점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의 조사와 결정 권한을 피해자에게 이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공론화'나 '공식적 해결'만을 올바른 해결로 생각하지 않는다.
4. 충분한 조사 없이 가해자의 탈퇴, 제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제 9조 (신고) ①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제1항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사건을 다룰 수 있다.

제 10조 (신고의 각하)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즉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시조치)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고를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해자, 회원, 사업 담당자, 기타 구성원 등에게 위의 각 호의 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온/오프라인 공동활동공간으로부터의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2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행정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조정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피치 못할 사정의 경우 신고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6. 조정위원회는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정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경과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13조 (조사의 방법)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및 서한 답신 요청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제 1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조정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 15조 (신고의 기각)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제 8조 제 2항에 의거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 (당사자 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조정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19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17조 (분쟁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19조 제 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는 정지된다.

④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8조 (신고의 철회) 피해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9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즉시 조정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징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가해자가 운영위원일 경우 조정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정관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임시조치와 구제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5. 누구라도 조정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제 21조 (이의절차) ① 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통지 받은 후 5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③ 재조사 절차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이의신청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2조 (보고서의 작성)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조정위원회는 내부용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3조 (사건의 공개 범위 등) ①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건의 결정사항은 회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피해자는 조정위원회에 사건의 공개 범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형식,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

제 24조 (2차 피해의 방지) ① 2차피해라 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폭력, 정신적 협박, 물리적 강압, 집단적 따돌림, 업무상 괴롭힘, 피해자 신변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 행동 및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말한다.

② 조정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운영위는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5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 26조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27조 (비밀 유지) ①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28조 (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29조 (후속조치) 운영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 교육시행
2.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시행
3.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자문
4.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부칙

제 1 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경우 행성인 정관과 내부규약, 기타 인권단체의 관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제 2 조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참조목록

1. 고려대학교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
2. 청소년유니온 평등·존중·환대의 공동체를 위한 조직문화 해설집
3.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성폭력 사건처리 규정
4. 매듭 반성폭력 규약
5. 인권운동사랑방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6.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7. 공생의 조건 자료집